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23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고, 성북구 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 “2회에 한하여” ⇒ “두 차례만”
- 안 제7조제1항 :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나. 심의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¹⁾ 반영 (안 제6조)

- 1)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료, 기념품 등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안 제8조)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마.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권한의 성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반영	제6조(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발행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방안을 시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향후, 주민들이 성북소식지의 제작·발행과 참여 이벤트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